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3749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8. 1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9. 10. 18. 접수 제266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판사 이재욱

별지